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병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「병역법」 일부개정(법률 제 19791호, 2023. 10. 31. 공포, 2024. 5. 1. 시행)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 소집 목적에 부사관 임용 자격과 세부 시행 권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. 또한,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(인력정책과-2839, 2018. 9. 6. 시달, 2018. 10. 1. 시행)에 따라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을 위한 지원자격 중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된 복무기간으로 개정하기 위함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법 제55조의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에 반영(안 제115조 ①, 제115조의3·4 개정)
- 나.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(인력정책과-2839, 2018. 9. 6.)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개정 반영(안 제115조의3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. 22. ~ 3. 4.)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5조 ①, 제115조의3·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5조 ①(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)

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,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을 진급시키거나 장교 및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5조의3(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의 임용)

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1. 18개월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소집되어 18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

제115조의4(예비역 진급권자·임용권자)

②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과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의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이 행하되,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

권한의 일부를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
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5조(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 집) ② ~ ③ (생략)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, 보 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을 진급시 키거나 <u>장교임용에</u> 필요한 자격 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 일 전까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제115조(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 집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① ----- ----- ---장교 및 부사관 임용에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15조의 3(<u>예비역 장교의 임용</u>)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 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 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 에는 <u>예비역장교로</u> 임용할 수 있다. 1. <u>2년</u>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 친 사람 또는 소집되어 <u>2년</u>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 람	제115조의 3(<u>예비역 장교 또는 부 사관의 임용</u>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으 로-----. 1. 18개월 ----- -----18개월 ----- -----

제115조의 4(예비역 진급권자 ·) 임용권자 ① (생 략) ②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<u>진</u> <u>급</u>은 각 군 참모총장이 행하 되,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	제115조의 4(예비역 진급권자 ·) 임용권자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진 급과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 관의 임용은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동원기획관실 자원동원과	
연 락 처	(02) 748 - 5224